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48
----------	-----

2016. 3. 15.(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엄재창 의원 등 7명
- 나. 제출일자 : 2016년 2월 24일
- 다. 회부일자 : 2016년 2월 24일
- 라. 상정일자 : 2016년 3월 4일
 -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엄재창 의원)

가. 제안사유

-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충청북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 대상 및 업무 판단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도지사가 도내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 금번 제정조례안은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충청북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 대상 및 업무 판단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도내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금번 제정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기간에 희생된 민간인 중,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과 지원기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과 화해 조치를 위한 사업의 지원 등 조례제정 취지와 구성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엄재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8
----------	-----

발의연월일 : 2016년 2월 24일

발 의 자 : 엄재창, 임희무, 김영주,
연철흙, 윤은희, 최광옥,
임병운

1. 제정이유

-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충청북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지사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 대상 및 업무 판단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도지사가 도내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나. 관련부서 협의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월17일~22일(5일간)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충청북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희생자“란 6·25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 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조치
2. 민간인 희생자가 도지사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시장·군수가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도지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기타 참고사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권고사항]



2. 권고 또는 화해조치

가. 사과

국가는 고양 금정굴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이 아무런 적법절차 없이 집단희생되었으며, 그 유족들이 오랜 세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온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

나. 명예회복

정부는 희생자의 호적 등에 '행방불명'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여 유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다. 재발방지

정부는 비록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라도 사법심사 없이 민간인이 임의 처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시하 비무장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수령, 군형법 등 제반 법률 내의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를 권고한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대상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다. 또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잘못된 기록을 수정하고, 향후 역사관련 교재에도 위의 진실규명 내용을 수록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전쟁기 고양 금정굴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비극과 잘못을 이후 세대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연구, 교육할 수 있는 고양지역의 역사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라. 화해와 위령사업

정부는 현재 서울대병원 법의학교실에 임시 보관되어 부식되고 있는 유골·유해를 영구 봉안 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무하고, 지역민과 국민들에게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금정굴 지역에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적절한 위령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